

제 호

임시시장 신고확인증

1. 시장 명:
2. 개설 자:
3. 소재 지:
4. 시장 면적:
5. 개설 기간: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시장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